의안 버 ㅎ

1492

【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】

토보고

### 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8. 11. 8.(화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9.(수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2. 3.(월)

#### 2. 제안이유

중소기업 육성·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(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)
- 다.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근로자 사기진작(안 제7조, 안 제8조)
- 라.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(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)
- 마. 업무위탁(안 제19조)

##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 | 제9조제2항
- 나. 「중소기업 기본법 | 제3조제2항

#### 5. 검토의견

- O 상위법령인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·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음.
- O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.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근 거 법 규

## 중소기업법

- **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 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자치법

- **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~ 중 략 ~
  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   - 가. 소류지(小溜池) · 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  - 나. 농산물 · 임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  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  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
   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
   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   - 사. 공유림 관리
   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  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  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 · 지원
   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  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  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
    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